

ESG 위원회 규정

| | |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소관부서 | 이사회지원부서 | 5 차개정 |
| 제 정 | 2022.11.08 | 6 차개정 |
| 1 차개정 | | 7 차개정 |
| 2 차개정 | | 8 차개정 |
| 3 차개정 | | 9 차개정 |
| 4 차개정 | | 10 차개정 |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[목적] 이 규정은 주식회사 씨젠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ESG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[적용 범위]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[직무와 권한]

1. 위원회는 환경(Environmental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 관련된 회사의 중장기 방향 및 목표설정, 주요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한다.
2. ESG 관련 전략 및 비재무 리스크 검토 및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.
3. 기타 ESG 관련 다양한 의사결정 사항을 검토한다.

제 2 장 구성

제 4 조 [구성]

1.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2.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이 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
3.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 5 조 [위원장]

1.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2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
3.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책임기간이 긴 사외이사, 책임기간이 동일한 경우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의

제 6 조 [소집권자]

1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 [소집절차]

1.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 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, 서면/전자문서/구두 등 통지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.
2.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 [결의방법]

1.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3.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4. 전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 [부의사항]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아래 각호와 같다.

1. 회사의 ESG 중장기 전략방향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ESG 과제의 실행계획 및 결과보고
3.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 10 조 [이사회와의 관계]

1. 위원회 결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2.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참고하되 위원회의 결의사항 및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.

제 11 조 [관계인의 의견청취]

1.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2.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2 조 [의사록]

1.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칙

제 13 조 [간사]

1. 위원회의 간사는 ESG 담당 임원으로 한다.
2.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 14 조 [규정의 개폐]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

제 1 조 [시행일]

이 규정은 202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